

#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5월 18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개정함.(제명)
-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2조 및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가?	○ 없음.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당연직 위원수는?	○ 35명중 당연직이 11명임. (이상 총무과장)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의결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개정함.(제명)
-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첨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등에 관한 조례

#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지역내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의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부천시의회의장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3. 부천교육청 교육장

4. 부천남부경찰서장

5. 부천중부경찰서장

6. 육군 제7873부대장

7. 국군기무사령부 제601부대 부천지역 담당관

8. 국가정보원 부천지역 담당관

9. 부천소방서장

10. KT부천지사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  
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1.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7873부대 동원장교

4.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7873부대 작전장교

5. 경찰담당간사: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시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시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시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

다. 이 경우 각 지원반의 반장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한다.

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부대의 참모 또는 과장급 경찰관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의 정보·작전·통신 분야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⑥ 시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⑦ 시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동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동지원본부는 제8조제6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동지원본부는 피해복구와 통신지원을 담당하는 총괄지원반과 의료·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실장은 동주무가 되고, 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⑤ 동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04. 01 조례 제1566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개정 2001. 07. 27 조례 제1841호

전문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8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①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선정 및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유사시 군 작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의 건설, 저수지나 호수의 조성 등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작전환경 변화와 관련된 계획
7. 전술헬기장 관리예산
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의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사항
3.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①협의회 의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회의장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3. 부천교육장

4. 부천남부경찰서장
5. 부천중부경찰서장
6. 103보병여단 48대대장
7. 국군기무사령부 601부대 부천지역 담당관
8. 국가정보원 부천지역 담당관
9. 부천소방서장
10. KT 부천지사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103보병여단 48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103보병여단 48대대 동원장교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5. 경찰담당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5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 부시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 : 분야별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자

-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 ④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지원본부) ①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 ③지원본부의 운영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진돗개 “하나” 발령 시

3.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전국 훈련 시

4. 기타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단위 군부대 훈련 시

④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은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반원은 과장급 인원과 각 지원반 대표 1명으로 운영하고,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부대의 참모 또는 과장급 경찰관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의 정보·작전·통신 분야의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산업·수송·장비,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정 부기능반(총무 3종시)으로 구성한다.

⑦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부천시청 내에 둔다.

⑧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동 지원본부) ①각 동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동 지원본부는 피해복구와 통신지원을 담당하는 총괄지원반과 의료·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의조직이나 기능변화로 시에서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동에 지원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주무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둔다.

⑥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행정절차) ①지원본부는 피해복구, 보급, 의료시설, 유류보관 및 판매시설 등 기능별 작전지원소요 집행 능력을 보유한 관, 민 기관 또는 단체, 회사를 지정하여 평상시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본부는 국가중요시설, 심장·발전기 등과 같은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 및 생활필수시설과 주민안전 위해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지원본부는 통합방위훈련을 위한 군·경 정보 및 작전 합동상황실 요원의 통신, 숙식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④지원본부는 향방 동원된 예비군과 타 지역에서 전환되어 작전에 참가하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전투근무지원과 행정적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지원본부는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현황을 유지·보완하여야 한다.

⑥지원본부는 통합방위를 위한 자체훈련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향방훈련에 있어서 군·관·경·예비군 등 지역 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 ①협의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지역 내 작전취약지역을 군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심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선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발췌서>

### ○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오지) 또는 벽지(벽지)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저공)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개활지)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 (중앙협의회 소집등) ①중앙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12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3. 각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②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간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개정 2006.5.30>

제15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인접한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운영한다.

②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6.29>

③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20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전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기타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이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설정구역·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6.5.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합동보도본부는 각 방위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현지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

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의 경우 평시에 이를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방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